

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6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



1. 건 명 :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 명단 참조),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
4. 공 고 기 간 : 2026. 6. 16. ~ 2026. 6. 30.(15일간)
5. 문 의 :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최인혜 수사관(전화 031-646-1282)

【붙임】

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6. 16. ~ 2026. 6. 30.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박*형	'00.03.10.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46번길 **-**	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통지서	처분사유: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 미신고 ○ 부정수급액 등 총 반환명령액: 1,733,180원	폐문부재

2026. 6. 16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

